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5. 3 선고 2018가단80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영

변론 종결 2019. 4. 5

판결 선고 2019.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1. 5. 접수 제17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5.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변제기 2018. 7. 18., 이자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는 위 차용금 6,500만 원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그 투자의 이익금을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5,000만 원의 지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8. 1.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 9.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8. 10.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일부금 인 6, 的0만 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8 타채4827 호로 원고가 제3채무자 C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설계사 수수료 채권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9. 6. 그 중 7,318,984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되고 남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8. 11. 2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한 원금 6,500만원 및 2018. 1. 5.부터 2018. 11. 27.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76,109,30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내지 5, 9호증,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차용금의 약정이자 8,500만 원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과 원고의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지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약정금 채무로서 이자 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그 성질상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차용금 채무라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현우

별지